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결과

가. 제안일자 : 1997. 9. 19.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9. 19.

라. 상정일자 : 제55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4차회의(97. 9. 27.)상정

마. 의결일자 : 제56회부천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97. 11. 8.)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가. 제안이유

-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유통업 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나. 주요골자

- 기금조성의 재원(안 제3조)
 - 시 출연금(5년간 10억원)
 - 이자수익금
 -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용자상환금
- 기금의 관리(안 제5조)
 - 부천시 금고에 정기예치 방식으로 관리
- 용자조건(안 제11조)
 - 대출한도액은 매년 시장이 이를 공고
 -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 내지 3퍼센트 저리로 용자
 - 용자기간은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6개월간 연장가능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용자금 한도액은 얼마인가?	○ 1,000만원입니다.
○ 언제부터 용자를 실시할 계획입니까?	○ 금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체계적 심사내용

○ 없음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제311호
의결년월일	97. 11. 11. (제56회)

제안년월일:97. 11. 8.

제 안 자: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소규모유통업의 정의를 매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로 한정함으로써 영세 소규모유통업사업자가 실질적인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수정하게 되었음.

2. 주요골자

가. 소규모유통업의 매장면적 규모를 33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20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로

축소 조정함.(안 제2조)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유통업”이라 함은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유통업”이라 함은 <u>매장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u>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u>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u>

[수정안포함]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유통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규모유통업”이라 함은 매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점포에서 종합소매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구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출연금
2. 이자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보조금 및 용자상환금

제4조(기금재원) 이 조례에서 정한 시 출연금은 5년간 총 10억원으로 하되 1차년도 1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2억원, 4차년도 2억원, 5차년도 3억원을 출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출연금을 증액하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기금은 부천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정기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시금고에서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규모유통업 사업자(이하 “유통업사업자”라 한다)에게 용자한다.

제6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유통업사업자에 대한 용자 등 소규모유통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기금의 용자를 받은 유통업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용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시설의 현대화
2. 상품구매
3. 사업장운영
4. 기타 사업장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8조(용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년 용자실시 전에 용자금총액, 용자한도액, 용자의 대상, 용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용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용자신청) 용자를 받고자 하는 유통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용자대상자 선정)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따라 용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금고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의 대상자 선정에 따른 용자심의를 위하여 부천시용자심의회를 둔다.

제11조(용자조건) ①기금의 용자에 관한 대출 한도액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 정한다.

③용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개월

간 연장할 수 있다.

④용자절차,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용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시금고간의 협약에 의한다.

제12조(추가용자) 시금고에서는 연도중 수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 용자할 수 있다.

제13조(용자금상환) ①지원된 기금은 1년거치 2년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용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용자를 받은 유통업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용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2.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때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정경제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유통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용자개시) 이 조례에 의한 용자는 대상자를 선정 통보한 날부터 시금고가 행한다.